

간호법 일부개정법률안
(이수진의원 대표발의)

의안 번호	18372
----------	-------

발의연월일 : 2026. 4. 16.

발 의 자 : 이수진 · 임미애 · 서미화
박희승 · 전진숙 · 서영석
백혜련 · 송옥주 · 장종태
이개호 · 남인순 · 김문수
김남희 의원(13인)

제안이유 및 주요내용

현행법은 진료지원업무를 할 수 있는 간호사의 범위를 전문간호사 또는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임상경력 및 교육과정의 이수에 따른 자격을 보유한 간호사로 한정하고 있음.

그런데 현행법은 이 중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임상경력 및 교육 과정을 이수하고 진료지원업무를 수행하는 간호사의 자격명칭에 대하여 별도의 규정을 두고 있지 않아 의료기관별로 그 명칭이 다양하고 상이하여 의료현장에서 혼란이 초래되고 있음. 또한 진료지원업무의 중요성에도 불구하고 이들에 대한 국가 차원의 체계적인 자격 관리 시스템이 부재하여 해당 업무 수행의 적정성과 전문성을 담보하기에 한계가 있을 수 있음.

이에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임상경력 및 교육과정의 이수에 따른 자격을 보유하고 진료지원업무를 수행하는 간호사의 명칭을 ‘전담

간호사'로 규정하고, 전담간호사의 자격인정 규정을 신설함으로써 의료현장에서의 간호사 명칭에 대한 혼란을 방지하고 진료지원업무의 전문성을 강화하려는 것임(안 제2조제3호, 제5조의2 및 제13조의2 신설 등).

간호법 일부개정법률안

간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2조제3호부터 제6호까지를 각각 제4호부터 제7호까지로 하고, 같은 조에 제3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, 같은 조 제5호(중전의 제4호) 중 “전문간호사”을 “전문간호사·전담간호사”로 한다.

3. “전담간호사”란 제5조의2에 따른 자격인정을 받은 사람을 말한다.
제5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제5조의2(전담간호사 자격인정) ① 보건복지부장관은 간호사에게 제4조에 따른 간호사 면허 외에 전담간호사 자격을 인정할 수 있다.

② 전담간호사가 되려는 사람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임상경력 및 교육과정 이수 요건을 갖춘 사람으로서 보건복지부장관이 실시하는 전담간호사 자격시험에 합격한 후 보건복지부장관의 자격인정을 받아야 한다.

③ 전담간호사의 자격 구분, 자격 기준, 자격 시험, 자격증,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.

제10조제1항 중 “제4조부터 제6조까지”를 “제4조·제5조·제5조의2 및 제6조”로 하고, 같은 조 제3항 중 “전문간호사”를 “전문간호사·전담간호사”로 한다.

제11조제1항 중 “제4조부터 제6조까지”를 “제4조·제5조·제5조의2 및 제6조”로 하고, 같은 조 제2항 중 “제4조부터 제6조까지”를 “제4조·제5조·제5조의2 및 제6조”로 한다.

제13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제13조의2(전담간호사의 업무) ① 전담간호사는 제5조의2제2항에 따라 자격을 인정받은 전문 분야에서 업무를 수행하여야 한다.

② 전담간호사의 업무 범위는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.

제14조제1항제2호 중 “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임상경력 및 교육과정의 이수에 따른 자격”을 “전담간호사 자격”으로 한다.

제31조제1항제7호 중 “교육전담간호사”를 “교육간호사”로 한다.

제32조의 제목 “(교육전담간호사)”를 “(교육간호사)”로 하고, 같은 조 제1항,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, 같은 조 제3항 및 제4항 중 “교육전담간호사”를 각각 “교육간호사”로 한다.

부 칙

제1조(시행일)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제2조(전담간호사에 관한 경과조치)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제14조제1항제2호에 따라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임상경력 및 교육과정의 이수에 따른 자격을 보유한 자는 제5조의2의 개정규정에 따른 전담간호사 자격인정을 받은 것으로 본다.

제3조(다른 법률의 개정) ① 의료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4조제5항 본문 중 “「간호법」 제2조제3호”를 “「간호법」 제2조제4호”로 한다.

② 노인복지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39조의6제2항제1호의2 중 “「간호법」 제2조제3호”를 “「간호법」 제2조제4호”로 한다.

③ 법률 제21104호 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15조제2항제3호 중 “「간호법」 제2조제3호”를 “「간호법」 제2조제4호”로 한다.

④ 법률 제21266호 장애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59조의4제2항제3호 중 “「간호법」 제2조제3호”를 “「간호법」 제2조제4호”로 한다.

신 · 구조문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
<p>제2조(정의)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.</p> <p>1.·2. (생략)</p> <p><u><신설></u></p> <p>3. (생략)</p> <p>4. “간호사등”이란 간호사·전문간호사·간호조무사를 말한다.</p> <p>5.·6. (생략)</p> <p><u><신설></u></p>	<p>제2조(정의) ----- -----.</p> <p>1.·2. (현행과 같음)</p> <p>3. “<u>전담간호사</u>”란 제5조의2에 따른 자격인정을 받은 사람을 말한다.</p> <p>4. (현행 제3호와 같음)</p> <p>5. -----<u>전문간호사·전담간호사</u>----- -----.</p> <p>6.·7. (현행 제5호 및 제6호와 같음)</p> <p><u>제5조의2(전담간호사 자격인정)</u></p> <p>① <u>보건복지부장관은 간호사에게 제4조에 따른 간호사 면허 외에 전담간호사 자격을 인정할 수 있다.</u></p> <p>② <u>전담간호사가 되려는 사람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임상경력 및 교육과정 이수 요건을 갖춘 사람으로서 보건복지부장관이 실시하는 전담간호사 자격시험에 합격한 후 보건</u></p>

제10조(면허 또는 자격의 등록과 조건) ① 보건복지부장관은 제4조부터 제6조까지에 따른 면허를 내주거나 자격인정을 할 때에는 그 면허 또는 자격에 관한 사항을 등록대장에 등록하고 면허증 또는 자격증을 발급하여야 한다.

② (생략)

③ 제1항의 등록대장은 간호사·전문간호사·간호조무사별로 따로 작성·비치하여야 한다.

④ (생략)

제11조(면허 대여 금지 등) ① 간호사등은 제4조부터 제6조까지에 따라 받은 면허 또는 자격을 다른 사람에게 대여하여서는 아니 된다.

② 누구든지 제4조부터 제6조

복지부장관의 자격인정을 받아야 한다.

③ 전담간호사의 자격 구분, 자격 기준, 자격 시험, 자격증,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.

제10조(면허 또는 자격의 등록과 조건) ① -----제4조·제5조·제5조의2 및 제6조-----

② (현행과 같음)

③ -----전문간호사·전담간호사-----

④ (현행과 같음)

제11조(면허 대여 금지 등) ① -----제4조·제5조·제5조의2 및 제6조-----

② -----제4조·제5조·제

까지에 따라 받은 면허 또는 자격을 대여받아서는 아니 되며, 면허 또는 자격의 대여를 알선하여서도 아니 된다.

<신 설>

제14조(진료지원업무의 수행) ① 제12조제2항에 따른 진료지원 업무를 수행하려는 간호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.

1. (생략)
2.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임상경력 및 교육과정의 이수에 따른 자격을 보유할 것

② (생략)

제31조(간호인력 지원센터의 설치 및 운영) ① 보건복지부장관은 보건의료기관 등 지역사회의 다양한 간호현장에 근무

5조의2 및 제6조-----

제13조의2(전담간호사의 업무) ①

전담간호사는 제5조의2제2항에 따라 자격을 인정받은 전문 분야에서 업무를 수행하여야 한다.

② 전담간호사의 업무 범위는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.

제14조(진료지원업무의 수행) ①

1. (현행과 같음)

2. 전담간호사 자격-----

② (현행과 같음)

제31조(간호인력 지원센터의 설치 및 운영) ① -----

사는 다음 각 호의 직무를 수행한다.

1. ~ 4. (생략)

③ 국가는 제1항에 따른 교육전담간호사 운영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.

④ 제1항에 따른 교육전담간호사의 배치 대상과 기준은 의료기관의 종류 및 규모, 신규간호사등의 수 등을 고려하여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.

-.

1. ~ 4. (현행과 같음)

③ -----교육간호사-----

④ -----교육간호사-----

-----.